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30(수) 10:00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64호

나. 제 출 자 : 고성미의원, 고영찬의원, 정순기의원, 장규권의원,
정재동의원, 엄셋별의원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금천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금천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한다.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에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법 제13조

--.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제4항-----

제8조의 3(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 제5항 및 영 제43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 명의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생략)

---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
----- 영 제52조제1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징계) -----
----- 영 제49조-----
----- 영 제50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준용규정 등) ①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② (현행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9조로, 정례회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로,
- 안 제5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관련 인용된 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제3호의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제4호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으로,

-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9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로,
- 제8조의2에서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으로,
- 제8조의3에서 고발의 절차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으로,
- 제10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 제11조에서 징계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로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생략)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 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 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 ③ (생략)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 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50호, 2021. 3.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02-2627-2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08>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8.07.0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8.07.03, 2000.3.21, 2011.12.29.,2021.3.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07.0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 조사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98.07.03, 2021.3.18.>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의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1.3.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개정 2021.3.18.>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감사. 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2항의 조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4.12.15>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 신설 '98.07.03]<개정 2004.12.15>

-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8.07.03, 2009.04.06>
- ② 외부전문가는 당해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신설 2009.04.06>
- ③ 의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4.06., 개정 2021.3.18.>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 까지에 따른 금천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04.08>
 3. 금천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04.08.,2021.3.18.>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금천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04.08, 2021.3.18.>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금천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금천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한다. <개정 2008.04.08.,2021.3.18.>
-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의2(감사 또는 조사의 제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97.07.03]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제7조의2(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98.07.03]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사무보조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04.12.15><개정 2009.04.06>
- ③ 사무보조자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장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15><개정

2009.04.06>

- ④ 제1항 및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금천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5., 2021.3.18.>
-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8, 2011.05.13, 2011.12.29>
-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⑧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 그 밖의 유사한 저장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04.06>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에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04.08>

제8조의 3(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 제5항 및 영제43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명의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 시킨다.

[본조신설 2011.05.13]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③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8, 2011.12.29>

제10조의 2(주의의무)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8.07.03]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04.08., 2021.3.18>

제12조(준용규정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의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부칙 ('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07.03)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